

년 월 일

시민세·부민세·삼림환경세 납세관리인 선임 면제 인정 신청서

(수신처) 히가시오사카 시장

납세자 주소 또는 소재지

성명 또는 명칭

전화번호

히가시오사카시 세금 조례 제 9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관리인 미정 인정을 신청합니다.

납세관리인 미정 이유

- ① 계좌 이체
- ② 그 외()

근거법령 지방세법 제 300 조 · 히가시오사카시 세금 조례 제 9 조

문의·제출처

〒577-8521

히가시오사카시 아라모토키타 1-1-1 히가시오사카시 세무부 시민세과

전화 06-4309-3135 FAX 06-4309-3809